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 위생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45호
- 나. 제출자 : 고영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5. 28.
- 라. 회부일자 : 2024. 5. 28.

## 2. 제안이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첨부서류(안 제3조)
- 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안 제4조)
- 라.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및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안 제5조 및 제6조)

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안 제7조)

바. 영업신고 표시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안 제8조 및 제9조)

#### 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음식판매자동차<sup>1)</sup>의 영업장소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 안 제2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3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대해,

1) 음식판매자동차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14호에 명시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의미함.

- 안 제4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과 이에 대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한 구청장의 지정 여부 결정에 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금천구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 및 그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 안 제7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 안 제8조에서는 영업신고 표시 부착에 대하여,
  - 안 제9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4. 8. 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유원시설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 가능해지고 이후 관광지 등으로 영업장소가 확대되면서 2015. 10. 21.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이 추가되었으며 2017. 12. 29.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가 직접 영업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됨.
- 또한, 2018. 1. 9.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대상자의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 이에 본 조례안은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sup>2)</sup>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미 시행중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현행화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금천구에는 12대의 음식판매자동차가 영업신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등 208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금천구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 민원발생을 우려한 시설관리자의 소극적 태도, 창업희망자의 사업실패 우려, 창업비용 부담에

2)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따른 진입장벽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의 입법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 식품위생법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307호, 2024. 2. 13., 일부개정]

###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2호, 2024. 3. 29., 일부개정]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6.>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19.] [총리령 제1951호, 2024. 4. 19., 일부개정]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19., 2012. 1. 17., 2012. 5. 31., 2014. 8. 18., 2014. 10. 13., 2015. 8. 18., 2015. 12. 31., 2016. 6. 30., 2017. 12. 29., 2020. 12. 31., 2021. 12. 30.>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별표 15의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이 호에서 "관광지등"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호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민간체육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민간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가.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를 받은 자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7.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